

부천시 도시계획 시설(공원 : 근린공원) 결정에 대한 의견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5월 11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5월 1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1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(2005년 5월 16일)
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 설명자 : 도시과장 오응완)

□ 제안사유

- 공원계획지가 위치한 오정동 2-1번지 일원은 오정구청사의 입지로 인하여 향후 오정구의 중심지역으로서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나 신시가지에 비하여 생활환경이 비교적 낙후된 지역으로,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건전 문화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공원을 지정·조성함으로써 동 지역 주민들의 여가·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
- 공원결정을 위하여 2003. 9월 부천시의회 의견청취 및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등 관련 절차를 거쳐, 2004. 12월 GB관리계획승인을 받았으나 농지의 분할이 최소화 되도록 재 배치 조건부 의결되어, 금회 공원계획부지를 변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제 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듣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오정대공원은 오정구청사 북측의 개발제한구역에 49,400m²의 규모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와 지식습득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신·구시가지의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도시계획으로 공원시설을 결정하고자 함.

□ 근거법령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가목

3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○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동 건을 회부할 때 승인인지 아니면 자문을 구하는 사항인지 ?	○ 부천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·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자문을 받는 사항이고 그결과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함.
○ 2004. 12. 17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사항인데 사업의 지연 사유는 ?	○ 주관부서(공원관리사업소)의 승인사항에 대한 경계측량, 용역등 수정내용을 도시과로 송부하면 신문 공고하는 절차 이행에 따라 지연됨.
○ 오정대공원에 편입되는 토지이외의 주변 토지주의 반발은 예상하는지	○ 오정대공원이외의 주변 토지 또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연차적 공원으로 조성될것임.
○ 기존안에 있는 것은 오정대로에서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는데 공원 조성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방법은 없는지 ?	○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있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결과로써 변경은 불가함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찬성의견 채택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8. 붙임서류 : 의견서 1부

부천시 도시계획 시설(공원 : 근린공원)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의견서

의안번호	제389호	안전명	부천시 도시계획시설(공원 : 근린공원) 결정에 대한 의견안
제 출 자	부천시장	의 결 년월일	제119회 부천시의회 (임시회) 제2차 본회의 (2005. 5. 19)

부천시 도시계획 시설(공원 : 근린공원) 결정에 대한 의견

신·구시가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과 건전 문화공간 확충 일환으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원시설이나 녹지공간은 점차 확충되어야 하는 필요 정책임.

도시계획시설(공원:근린공원)을 결정하고자 하는 오정구 오정동 2-1번지 일원은 2004년 12월 1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농지의 분할이 최소화되도록 재배치하여 공원을 조성하도록 조건부 의결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승인내용대로 적법절차를 이행하고 동 지역 일대를 대공원 규모에 걸맞은 시민 휴식공간이 조성되도록 일정규모만큼 확대하여 도시계획시설(공원:근린공원)로 지정되어야 함.

2005년 5월 19일

부천시의회 의장

부천시 도시계획시설(공원 : 근린공원) 결정에 대한 의견안

의안 번호	제389호
의결 년월일	2005.5.19 (제119회)

제출연월일 : 2005. 05. 11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공원계획지가 위치한 오정동 2-1번지 일원은 오정구청사의 입지로 인하여 향후 오정구의 중심지역으로서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나 신시가지에 비하여 생활환경이 비교적 낙후된 지역으로,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건전 문화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공원을 지정·조성함으로써 동 지역 주민들의 여가·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.
- 공원결정을 위하여 2003.9월 부천시의회 의견청취 및 부천시 도시계획 위원회등 관련 절차를 걸쳐, 2004.12월 GB관리계획승인을 받았으나 농지의 분할이 최소화 되도록 재 배치 조건부 의결되어, 금회 공원계획부지를 변경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듣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오정대공원은 오정구청사 북측의 개발제한구역에 49,400㎡의 규모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와 지식습득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신·구시가지의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도시계획으로 공원시설을 결정하고자 함.

□ 관련근거
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라목

부천시 도시계획시설(공원 : 근린공원)결정에 대한 의견안

□ 도시계획시설(공원 : 근린공원)결정 조서안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m ²)		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	공원	근린공원 (오정대공원)	오정구 오정동 2-1번지 일원		증)49,400	49,400	

□ 도시계획시설(공원 : 근린공원)결정 사유

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결 정 사 유	비 고
	근린공원 (오정대공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오정구청사의 입지와 함께 오정구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의 여가활동 및 교육공간에 부흥하는 오정구 중심의 공원 조성 ·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 ·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	

□ 참고사항

- 도시계획 용도지역 · 지구 · 구역 : 자연녹지지역, 최고고도지구, 개발제한구역
- 사업시행시기 : 2005. ~ 2007.
- 사업시행자 : 부천시장(녹지공원관리사업소)
- 공원(근린공원) 편입토지 현황

- 소유자별 편입토지 현황

구분	계	국유지	사유지	기타	비고
면적(m ²)	49,400	4,192	45,208		
필지수	33	7	26		
구성비(%)	100.00	8.5	91.5		

- 지목별 편입토지 현황

구분	계	전	답	구거	도로	비고
면적(m ²)	49,400	7,422	37,773	2,296	1,909	
필지수	33	7	18	5	3	
구성비(%)	100.00	15	76.5	4.6	3.9	

○ 추정 소요사업비

구분	총사업비	용지보상비	공사비	부대비
금액(백만원)	12,000	8,900	3,000	1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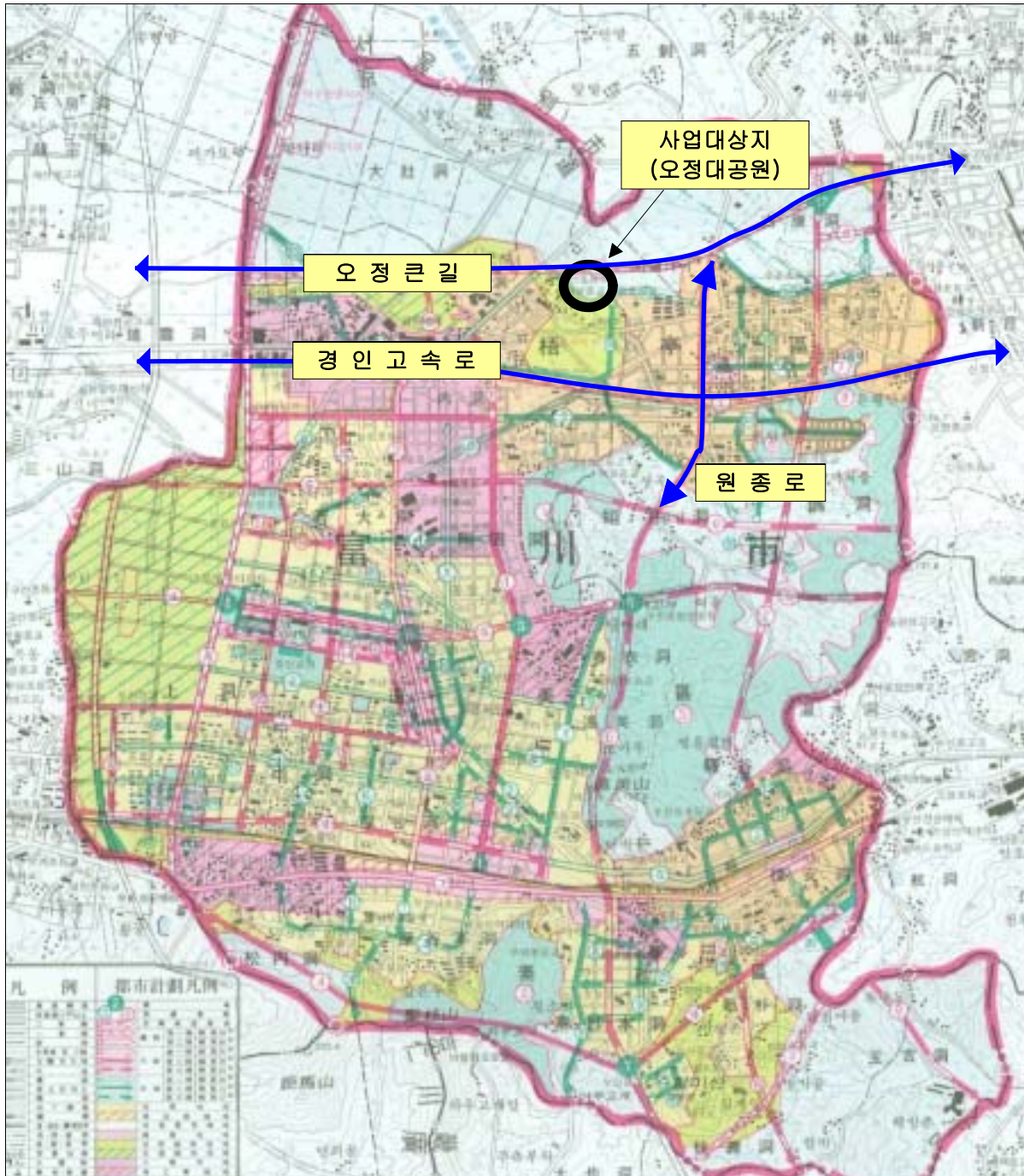
○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(안)

- 2006년도 국·도비 30억 지원요청 및 시비 확보

○ 도시계획 결정권자

- 공원(근린공원) : 경기도지사(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)

□ 위치도



□ 오정대공원 결정도

